

교직원보수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법인정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보수”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의 합산금액을 말한다.
- ② “봉급”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 ·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.
- ③ “수당”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.
- ④ 봉급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
- ⑤ 평균보수라 함은 연간 총보수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된 것을 말한다.

제 2 장 봉 급

제 3 조(봉급) ① 정년제 전임교원과 정규직원의 봉급월액은 당해년도 공무원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정년제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, 계약교원과 비정규직원, 조교의 봉급월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삭 제

③ 제1항의 봉급 제수당을 합한 보수월액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사회 의결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호봉획정 및 승급

제 4 조(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)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.

제 5 조(초임호봉의 획정) ① 교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.

② <삭제>

③ 정년제 전임교원의 초임호봉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의 교육공무원 경력연수가감 및 기산호봉 기준을 적용하여 획정하되 교육 및 연구경력, 기타 유사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「교원인사규정」에서 정한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기준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를 합산한다.

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.

⑤ 계약제 전임교원의 초임호봉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획정한다.

⑥ 당해 교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정기승급) ① 교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② 교직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직원은 승급제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달에 승급한다.

제 7 조(승급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.

1. 징계처분·직위해제 또는 휴직(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)에 있는 자

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정직 : 18개월

감봉 : 12개월

근신 또는 견책 : 6개월

3.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 등급에 해당되는 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 받은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.

제 8 조(승급기간의 특례) 제7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삽입한다.

1.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

2.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, 그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

3.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승인에 의한 국제기구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와 규정에 의한 연구년기간

제 9 조(호봉의 정정) ① 호봉의 확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.

② 제1항의 호봉의 정정은 해당 교직원의 현재의 호봉 확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,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확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수지급

제10조(보수지급 계산기간) 보수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1조(보수지급일)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25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12조(보수계산) ① 신규채용, 승진, 전직, 전보, 승급, 감봉,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② 승진과 감봉의 경우에는 발령일부터 실시하고 보수기준 개정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한다.

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월중에 면직하게 되는 경우는 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2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는 면직 직전 일까지 일할 계산하고, 탄핵, 해임, 파면,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, 그 월 1일자로 면직 또는 사의를 서면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④ 시보기간 중에도 정규직원과 동등한 보수를 지급한다.

- ⑤ 상여수당, 정근수당은 지급계산기간의 1/2 이상을 근무한 자에는 전액을, 1/2 미만을 근무한 자에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.
- ⑥ 정근수당과 상여수당, 체력단련비의 지급액 계산 기간은 1년(12개월)을 지급회수로 나눈 기간을 각각 지급액 계산기간으로 한다.
- ⑦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차등 지급액 계산방법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한 계산방법에 따른다.
- ⑧ 상여수당, 정근수당의 지급시기는 지급액 계산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보수 지급일로 한다.
- ⑨ 상여수당, 정근수당, 체력단련비의 지급회수와 지급시기는 따로 정한다.

⑩ 삭 제

- ⑪ 결근에 따른 보수지급은 당해월 평균보수에 결근일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. (당해월 평균보수는 당해월 총보수를 일수로 나눈 금액임.)

제13조(연구교수의 보수지급)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임용된 본 대학 연구교수의 보수는 임용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- ② 제1항에 의한 지급방법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자가 조정할 수 있다.

제14조(휴직기간 또는 해외파견 중의 처우) ① 정관 제44조(휴직의 사유) 제1호(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휴양을 요할 때)의 규정에 따라 휴직된 자는 그 기간 중 봉급 및 연구보조비(교수), 연구지원수당(직원)의 5할을 지급하고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및 연구보조비(교수), 연구지원수당(직원)의 8할을 지급한다.

- ② 정관 제44조 제5호(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)에 따라 휴직 또는 해외파견된 교원에 대하여는 1년에 한하여 봉급 및 연구보조비(교수), 연구지원수당(직원)의 5할을 지급한다. 단, 본교에 복귀하여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령분을 반환한다.

제15조(직위해제 기간 중의 처우)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 및 연구보조비(교수), 연구지원수당(직원)의 8할을 지급한다. 다만,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도 봉급 및 연구보조비(교수), 연구지원수당(직원)의 5할을 지급한다.

제 5 장 수 당

제16조(적용범위)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, 지급범위,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각 해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협의)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,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에 대하여 예산의 뒷받침이 안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
제18조(겸임수당) 교직원이 본직 외에 다른 직에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,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따로 정한다.

제19조(각종수당의 지급) ① 다음 각 호의 수당의 지급범위는 「공무원수당규정」을 준용한다.

1. 초과근무수당

2. 장기근속수당
3. 가족수당
4. 교과지도수당
5. 정근수당
6. 급량비
7. 체력단련비
8. 특수업무수당
9. 직급보조비
10. 삭 제
11. 삭 제
12. 삭 제
13. 자녀학비보조수당
14. 업무추진수당
15. 교통보조비
16. 명절휴가비

② 다음 각호의 수당의 지급방법·지급범위·지급액은 「공무원수당규정」을 준용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따로 정한다.

1. 상여수당
2. 교원 연구비
3. 학생지도비
4. 보직수당
5. 차량유류대
6. 교육조교 및 일반직원의 연구지원 수당
7. 교육조교의 생활교육수당 및 업무보조수당과 행정유급조교의 업무보조수당
8. 연장근무수당
9. 일직수당
10. 야간근무수당
11. 휴일근무수당

③ 제2항 1호부터 11호까지 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조정할 수 있다.

④ 제2항 8은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, 제2항 10은 주·야 교체 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. 제2항 11은 주·야 교체 근무자로서 국경일·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.

⑤ 제2항 11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일직수당을 제2항 10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숙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⑥ 제1항 3의 가족수당은 부양의무자의 증명을 제출한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. 다만, 부양가족의 증감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책임은 신고 의무자에게 있으며, 동일가족이 2인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 의무자에게만 지급한다.

⑦ 제1항 8호는 해당업무 담당자 또는 기술자격증소지자에게만 지급한다.

⑧ 제2항 제2호의 교원연구비 지급은 해당교수 총 급여액의 20%까지는 비과세한다.(단 적용비율

은 국세청기준에 따른다.)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(2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
 (3) 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전에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(2)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3조 ①항 5,6,7호 신설, 제19조 ①항 1호 삭제)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2조, 제14조 ①항, ②항 제15조 개정<'94 제9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 ④항, 제3조, 제12조 ⑪항 신설, 제13조 ①항, 제19조 개정 <'97 제13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9조 ⑧신설 <'99 제20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2조 ⑩항 삭제 <'02 제15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2조 제4항 개정 <'05 제7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 제1항 개정 <'05 제28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, 제5조제1항 개정, 동조제2항 삭제, 동조제3항 내지 제6항 신설,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<2012 제4차 교무위원회>)

제2조 (공무원보수규정 개정(2012.2.28.)으로 인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2012년 7월 22일 당시 조교수(B)로 재직 중인 자는 그 직위의 변동시점에 상관 없이 최초로 재임용되는 날에 호봉을 재확정한다.

② 2012년 3월 1일에 조교수(B)로 임용되었으나 종전 공무원보수규정의 전임강사 기준을 적용 받은 자는 최초로 재임용되는 날에 호봉을 재확정한다.